

대전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가합1014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한용현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의료법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8. 체결된
신탁계약을,

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서는 1,010,253,435원의 한도 내에서,

나.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서는 479,795,879원의 한도 내에서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010,253,435원, 원고 주식회사 B에 479,795,8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의료재단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

1) 원고들(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15. 3. 23. 의료법인 D(이하 ‘D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합계 2,218,700,000원(= 원고 A의 공사비 715,000,000원 + 원고 B의 공사비 1,503,7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2) D의료재단은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 2,218,700,000원 중 1,178,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4.경 원고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잔금 10억 4,000만 원을 3개월 내에 은행대출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원고들은 청주지방법원 2019차전2786호로 D의료재단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잔금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D의료재단은 원고 B에 334,880,000원, 원고 A에 705,1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019. 3. 28.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9. 5. 5. D의료재단에 송달되었고, 2019.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료재단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 1) D의료재단은 2017. 5. 18. 피고로부터 41억 원,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와 사이에 D의료재단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수익권증서 발행금액 49억 2,000만 원) 및 E은행(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말소

- 1)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2017. 2. 6. 접수 제11521호로 채권최고액 4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2017. 4. 11. 접수 제40937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각 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리고 위 첫 번째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4건에 이르는 각 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2) D의료재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17. 5. 18.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피고 및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2억 원 중 33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인 F에 그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함께 위 첫 번째 근저당권에 부기된 위 4개의 근저당권부질권도 모두 말소되었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경과

- 1) D의료재단의 채권자인 G, H는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380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2. 이 사건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79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2021. 1. 13.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21다21316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위 사건은 확정되었다(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2) D의료재단의 채권자인 I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03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2. 이 사건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41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2021.

11. 24.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2 관련사건’이라 한다)1).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2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3년 9개월 후에 제기되었고, 원고들은 2016.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 2017. 3. 6.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준 적이 있으며, 원고들은 위 가압류등기 및 그 말소를 전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근저당권 등기와 이 사건 신탁등기의 존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질 당시 D의료재단의 채무초과상태와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한참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46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D의료재단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청구금액 1,342,1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8.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181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 8. 22.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D의료재단이 2017. 2. 24.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0억 4,000만 원은 은행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지급하되, 원고들은 위 3억 원을 수령한 직후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 또는 취하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위 가압류등기가 2017. 3. 6.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원고들이 D의료재단의 구체적인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나아가 D의료재단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의 위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두 달 전인 2017. 3. 6. 이미 말소되었는바, 원고들이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포함한 D의료재단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D의료재단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료재단의 무자력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2 내지 15, 17, 1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17. 5. 18. 당시 D의료재단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 7,130,042,500원, 소극재산 8,953,676,4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D의료재단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재산내역		가액 또는 금액 (원)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7,019,060,500
	청주시 청원구 J 임야 154㎡	110,982,000
	K 답 46㎡	
	L 답 74㎡	
	M 답 44㎡	
적극재산 합계		7,130,042,500
소극재산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705,120,000
	원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34,880,000
	G에 대한 대여금채무	322,088,054
	H에 대한 양수금채무	270,000,000
	F에 대한 대출금채무	3,360,000,000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1,954,045,789
	O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97,000,000
	I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58,389,192
	P에 대한 대여금채무	1,652,153,425
소극재산 합계		8,953,676,460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료재단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819,060,500원 상당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은 위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료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채무자이자 위탁자인 D의료재단이 수익권을 갖는 이른바 자익신탁에 해당하기는 하나, D의료재단이 수익권 전부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피고와 E은행으로 하여금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게 하고, D의료재단은 후순위수익권자에 머물 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5조, 제8조 제3항 및 그 별지 2.에 의하면, 신탁원본인 신탁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등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및 E은행의 각 수익권이 후순위수익권자인 D의료재단의 수익권보다 우선하고, 위 계약서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의 처분정산 시 그 처분대금으로 신탁과 관련된 비용 및 신탁보수를 우선 변제한 다음 우선수익권자의 채권 등을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수익권자 내지 위탁자인 D의료재단에 지급된다.

㉢ 위탁자인 D의료재단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특성상 신탁이 종료되고 정산이 마쳐지기까지는 환가 가능 여부와 환가 액수 및 그 시기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신탁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우선수익자의 대출금채권 원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권의 가치로 보아 이를 쉽사리 책임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와 E은행의 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합계가 50억 4,000만 원(= 49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정산 시 그 처분대금으로 신탁 관련 비용과 신탁보수가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및 E은행의 각 대출금채권 총액(수익권증서 발행금액 한도 내)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신탁보수까지 우선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를 위탁자인 D의료재단의 수익권으로 보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바, 위 잔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이 D의료재단의 적극재산이 되는 것으로 쉽사리 단정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㉔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59288 판결 등 참조), 특히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 및 그 청구 목적이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D의료재단과 그 채권자들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인 제1 관련사건 및 제2 관련사건에서 D의료재단의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상태가 모두 인정되었다.

㉕ 신탁자가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와 사이에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신탁원본의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2003다36485(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D의료재단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2,819,060,500원 상당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위 수익권 가치 상당액을 D의료재단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D의료재단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수익권의 가치 상당액에다가 D의료재단이 보유한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이 여전히 앞서 본 D의료재단의

소극재산 합계액을 넘지 못하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의 주장

D의료재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대출받은 42억 원 중 33억 6,000만 원을 기존 근저당권자인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8억 4,000만 원은 요양병원의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성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 설정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인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의 가치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위 수익권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D의료재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2,819,060,500원 상당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7,019,060,500원에서 말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3억 6,000만 원과 D의료재단의 수익권 가치 상당액 2,819,060,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억 4,000만 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2) 관련 법리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그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신탁자가 행위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서 당해 법률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노력 등도 고려할 수 있는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0704 판결 참조).

3)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D의료재단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료재단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D의료재단이 가지는 수익권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㉞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D의료재단의 소극재산은 8,953,676,460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7,130,042,5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1,823,633,960원에 이를 정도로 D의료재단은 거액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㉟ 이 사건 신탁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 D의료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부동산 가액의 약 98.4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7,019,060,500원 ÷ 전체 부동산의 가액 합계 7,130,042,500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의료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사실상 전부 또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㊱ D의료재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대출받은 42억 원 중 33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위 대출금 중 나머지 8억 4,000만 원도 피고의 주장처럼 의료기나 집기 구입 등 사업추진을 계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D의료재단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 외에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D의료재단의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채권 실현에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신탁등기의 존재는 원고들을 비롯한 D의료재단의 일반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 만족에 있어서 기존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 D의료재단이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병원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D의료재단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서, 공사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병원 건물에 관한 잠재적 수익이 실현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증가한다거나 D의료재단의 채무변제력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인데도, 위 각 부동산이 신탁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 중 신탁비용, 신탁보수 및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에 충당하고 남은 대금은 위탁자인 D의료재단이 정산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0704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42394 판결, 대법원 2006. 11. 9.자 2006다60175 판결,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다54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는, D의료재단이 가지는 수익권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D의료재단의 일반채권자들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7,019,060,500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3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59,060,500원 상당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할 수 있었던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이 사건 신탁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의료재단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은 D의료재단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D의료재단의 수익권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데, D의료재단이 가지는 수익권의 가치가 피고의 주장처럼 2,819,060,50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도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당초 삼을 수 있었던 공동담보액인 3,659,060,5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D의료재단의 일반채권자들은 채권 만족에 있어 기존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D의료재단이 수익권 전부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E은행으로 하여금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D의료재단은 후순위수익권자에 머물 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자익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D의료재단이 보유한 수익권의 가치 상당액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전부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면 그 이전이 양도담보를 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담보신탁을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8. D의료재단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날 F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원물반환을 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포함)’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이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 가격에 의한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일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은 7,019,060,500원이고, 위 7,019,060,500원에서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 33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659,060,500원(= 7,019,060,500원 - 3,360,000,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원금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44650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원리금은 공사대금채권 원금 705,120,000원에다가 위 원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5.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23.까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정한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5,133,435원(= 705,120,000원 $\times$ 0.15 $\times$ 1,05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더한 금액인 1,010,253,435원(= 원금 705,120,000원 + 지연손해금 305,133,435원)이다.

② 원고 B의 피보전채권 원리금은 공사대금채권 원금 334,880,000원에다가 위 334,880,000원에 대한 위 2019. 5. 6.부터 위 2022. 3. 23.까지 위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4,915,879원(= 334,880,000원 $\times$ 0.15 $\times$ 1,053일/365일)을 더한 금액인 479,795,879원(= 원금 334,880,000원 + 지연손해금 144,915,879원)이다.

4) 소결론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 원리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중 적은 금액인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 원리금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D의료재단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1,010,253,435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B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479,795,879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 A에 1,010,253,435원, 원고 B에 479,795,8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혜영, 판사 이민정, 판사 박경환

[별지]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청주시 청원구 Q 대 1,807m²
2. 청주시 청원구 R 대 46m²
3. 청주시 청원구 S 대 2,054m²
4. 청주시 청원구 T 대 10m²
5. 청주시 청원구 Q, R, S, T

[도로명주소] 청주시 청원구 U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 의료시설

지1층 1,772.25m²

1층 741.98m²

2층 742.33m²

3층 750.38m²

4층 750.38m²

5층 636.37m². 끝.

1)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2022. 4. 14. 기각되었다(사건검색결과 등).